■ 건축법 시행규칙 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1.4.1>

건축 · 대수선 · 용도변경 허가서

· 건축물의 용도/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.

건축구분	신축	허가번호	2018-건축과-신축허가-181 (2018-3230165-1101-181)
건축주	강 외5인		
대지위치	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0 - 10		
대지면적			210.7 ㎡
건축물명	거여동 20-10 공동주택 (강)	주용도	공동주택(다세대주택)
건축면적	105.17 ㎡	건폐율	49.91 %
연면적 합계	481.58 ㎡	용적률	215.81 %
가설건축물 존치기간			

동고유번호	동명칭 및 번호	연면적(㎡)	동고유번호	동명칭 및 번호	연면적(㎡)
1	주건축물제1동	481.58			

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 · 대수선 · 용도변경허가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 · 대수선 · 용도변경허가서를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8조 · 제12조의2에 따라 교부합니다.

2018년 07월 16일

송파구청장 인

210㎜×297㎜[보존용지(2종) 70g/㎡]